

2012년 제1차 이사회 의사록

1. 일시 : 2012. 1. 4.(수) 19:05 ~ 21:55

(소집통지일 : 2011. 12.28)

2. 장소 : 호암교수회관 회의실(릴리룸)

3. 참석현황

- 참석이사 : 오연천(이사장), 김정배, 김창경, 노정혜, 류성걸, 박명규,
박명진, 박용현, 변대규, 송광수, 안병우, 이길여, 이준규,
임정기, 임지순 (이상 15명)
- 불참이사 : 없음
- 참석감사 : 김진해, 윤성복(이상 2명)
- 불참감사 : 없음
- 배석 : 법인설립추진단장 최종원, 기획처장 남익현, 사무국장
이승복(이상 3명)

이사장이 성원을 확인한 다음 이사회 개회를 선언함

4. 회의안건

보고사항

제1호. 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
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」의 주요 내용

의결사항

제1호. 이사회운영규정 제정(안)

제2호. 법인 사업자등록을 위한 지점 설치(안)

| |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간서명 | 이사장 오연천 <i>오연천</i> (인) | 이사 안병우 <i>안병우</i> (인) | 이사 박명규 <i>박명규</i> (인)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
제3호. 2011년도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입·세출예산(안)
(회계기간 : 2011.12.28 ~ 2012. 2.29)

5. 회의 주요내용

□ 보고사항

가. 제1호. 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」의 주요 내용

이사장이 위 보고사항에 대하여 법인설립추진단장에게 설명을 요청하여, 국립대학법인의 설치근거가 된 법률(2010.12.8. 제정)과 법인 정관(2011.12.15. 제정)에 담긴 법인의 운영체제와 이사회 권한 및 운영 등의 주요 내용을 참석 임원에게 보고함

□ 의결사항

가. 제1호. 이사회운영규정 제정(안)

이사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법인설립추진단장이 기획처장을 대신하여 동 규정(안)을 설명한 후 의결 요청하여, 이사들의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수정 및 조항 신설하고 나머지 조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제정하기로 의결함

- 아래 -

| 제정(안) | 수정(안) |
|---|--|
| 제3조(이사장)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 할 안건을 정하고,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<u>집행한다.</u> | 제3조(이사장)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 할 안건을 정하고,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<u>총장에게 통보한다.</u> |
| 제6조(의안제출) ①~② 생략 <u>③항 신설</u> | 제6조(의안제출) ①~② 생략 <u>③ 이사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개최일에 이사장에게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.</u> |

| | | | |
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간서명 | 이사장 오연천 (인) | 이사 안병우 (인) | 이사 박명규 (인) |
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
| 제정(안) | 수정(안) |
|---|---|
| 제8조(의결 등) ④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장은 차기 이사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 | 제8조(의결 등) ④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장은 차기 이사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 |
| 제14조(이사후보초빙위원회) ④ 이사후보초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~ 4. (생략) 5. 그 밖에 이사후보대상자의 모집 및 선정과 관련하여 이사후보초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| 제14조(이사후보초빙위원회) ④ 이사후보초빙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이사후보초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|

나. 제2호. 법인 사업자등록을 위한 지점 설치(안)

이사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사무국장이 설명한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함

다. 제3호. 2011년도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입·세출예산(안) (회계기간 : 2011.12.28 ~ 2012. 2.29)

이사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사무국장이 설명한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

□ 기타 논의사항

- 2012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 및 상근감사의 보수 건을 기획처장이 임원들에게 보고
- 본예산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5명(학내 2명, 학외 3명)으로 구성하기로 하고, 학내로는 임정기 이사(연구부총장), 박명규 이사, 학외로는 안병우 이사, 변대규 이사, 류성걸 이사(기획재정부 차관)가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기획재정부 주무국장으로 구성

| | | | |
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간서명 | 이사장 오연천 | 이사 안병우 | 이사 박명규 |
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

하며, 회의일정은 추후 통보하기로 함

6. 폐회 선언

이상 보고사항과 의결사항 등을 종료하고 21:55분에 이사장이 폐회를 선언함

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간서명 | 이사장 오연천 (의) <i>오연천</i> | 이사 안병우 (안) <i>안병우</i> | 이사 박명규 (의) <i>박명규</i> |
| - 4 - | | | |